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9075호

시행일자 2019. 11. 5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44호 (2019.11.4.)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2200호 (2019.11.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5호, 2019.10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주요내용 :
-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[정밀면역검사] 급여신설
- 항뮬러관호르몬[정밀면역검사] 급여신설
- 레보도파 경구 투여후 반응검사 급여신설
- 신경인지기능검사 별표 신설 등

나. 시행일 : 2019년 12월 1일부터

다. 추가문의 : 보건복지부 (044-202-2663)

붙 임 : 개정 고시문 1부.  끝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